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55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장철민의원안)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3. 10.

다. 회 부 일 : 2026. 3.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에 이르는 과세표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 기업의 막대한 초과 이익을 적절히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정유사 등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여 실제 원유 수입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국제 유가 지표 상승만을 핑계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반대로 유가 하락기에는 기존의 높은 가격을 꼬수로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임. 국가 경제와 직결된 에너지 시장에서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관리가 불가피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한 공급가 전반영 인상 및 국제유가 하락에도 공급가를 높게 유지하여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경우를 과세 요건으로 명시함.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5억 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장철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법인세율(제55조) ○ 법인세 과세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 ☐ <신 설>	☐ 법인세율(제55조) ○ 법인세 과세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 <u>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u> ☐ <u>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55조의3)</u> ○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 중 내국법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 요건: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제1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1회 이상 납부 - 제2호: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하게 국제유가 지표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국제유가가 급락하였음에도 석유제품 등의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등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 제3호: 초과소득(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

현 행	개정안
○	○ 세액: 초과소득 × 20%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장철민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호 17355)

□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과세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내국법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¹⁾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²⁾임.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과세요건은 ①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³⁾을 적용받아 1회 이상 납부하였거나 ②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하게 국제유가 지표

-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결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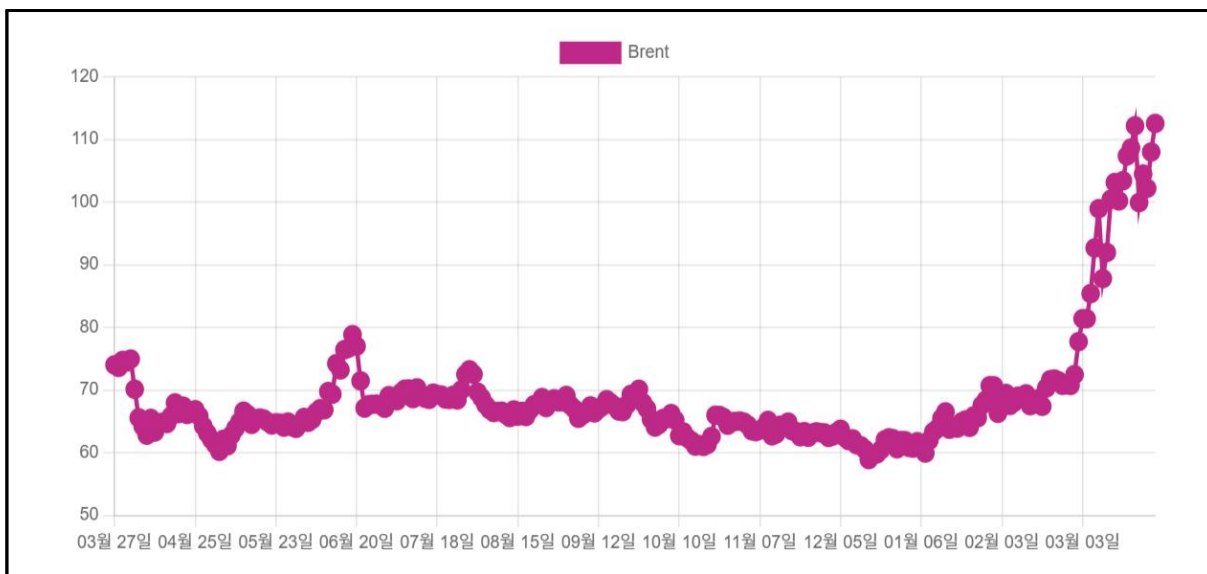
⑥ 제4항 및 제5항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국제유가가 급락하였음에도 석유제품 등의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등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경우 중 초과소득(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임.

법인세액은 초과소득에 단일세율 20%를 곱한 값이며, 동 법인세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6년 3월에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Brent유는 2026년 2월 27일 기준 72.5불/배럴에서 2026년 3월 17일 기준 103.4불/배럴까지 급등하였음.

[2025년 3월 ~ 2026년 3월 국제원유가격(Brent)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국내 휘발유 가격도 2026년 2월 27일 기준 1,693원/L에서 2026년 3월 12일 기준 1,899원/L까지 상승했고, 경유 가격은 2026년 2월 27일 기준 1,597원/L에서 2026년 3월 12일 기준 1,919원/L까지 상승하였음.

이에 정부는 수송용 유류(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7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그 인하폭도 확대하였음. 휘발유는 65원/L를 추가 인하했고, 경유는 87원/L를 추가 인하했음.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단위: 원/L)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25.4.30.	'25.5.1. ~ 10.31.	'25.11.1. ~ '26.3.26.	'26.3.27. ~ '26.7.31.
		휘발유 △25%	△20%	△15%	△10%	△7%	△15%
		경유 △37%	△30%	△23%	△15%	△10%	△25%
휘발유	820	615(△205)	656(△164)	698(△122)	738(△82)	763(△57)	698(△122)
경유	581	369(△212)	407(△174)	448(△133)	494(△87)	523(△58)	436(△145)

주: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자료: 정부 보도자료(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2026. 5. 21.)

또한, 정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되었음.

참고로 이와 같이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높은 수익을 올린

석유 기업 등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를 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이 있음.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경우 2022년 10월 ‘높은 에너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2022년 10월 6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854호’의 제정을 통하여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이라는 명칭으로 세금을 도입하였음. 2022년~2023년에 벌어들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Taxable Profits)이 2018년~2021년 4개년 평균에 비해 20% 넘게 늘어난 부분을 ‘초과이익’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최소 33%의 세율이 부과되었음.

또한, 영국은 2022년에 석유 및 가스기업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에너지 이익 부담금(Energy Profits Levy)이라는 명목으로 25%의 추가요율을 부과하여 영업이익에 대해 6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었음.⁴⁾

□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횡재세를 부과하여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초과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이 특정업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이익을 사회로 환류할 수 있음.

4) 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II(경제·산업 분야), 2024. 5.

동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외부요인으로 수익이 과도하게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에 따르면 횡재세는 기업에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이 산업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닐 때 정부가 금전적 이득을 분배하는 방법 중 하나임.⁵⁾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적용받은 혜택을 받은 경우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유가의 하락 등과 무관하게 가격을 높게 유지한 경우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가 상승 등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석유정제업자 등의 과도한 이익에 과세를 함으로써 초과수익을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환류할 수 있을 것임.

둘째, 기업이 초과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급가를 낮추도록 유도할 수 있음.

유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높은 공급가격을 유지하여 초과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개정안에서 제안하는 횡재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세후수익은 감소함.

5) 입법조사처,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2023. 3. 28.

따라서, 기업은 높은 공급가격을 유지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경제적 유인이 그만큼 감소하므로 기업에 공급가격을 낮출 유인을 제공하고, 가격상승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생기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초과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기업의 영업이익은 필연적으로 생산성과 운영 효율, 기술력, 마케팅 역량, 경영진의 의사결정 등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국제정세, 자연재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둘째, 외부적인 요인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감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셋째, 초과소득의 정의 및 과세 요건의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는 초과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

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횡재세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를 하려는 취지인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늘어난 소득금액을 전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늘어난 이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소득의 요건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5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5억원 이상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 것을 초과소득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주요 정유사인 GS 칼텍스의 2025년 영업이익은 8,840억원이고 HD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은 4,740억원이며, 에쓰오일의 영업이익은 2,882억원임. 이들 기업의 이익 규모에 비해 5억원의 이익 증가는 다소 작은 금액이므로, 요건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155

6)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상장 여부에 따라 초과이익 과세를 차등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업종 간 경기상황에 따른 차별적 과세는 곤란하다는 입장임.